

##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12. 21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8. 12.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99. 7. 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97. 3. 7 법률 제5301호) 및 동법시행령(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 동법시행규칙(97. 9. 18 환경부령 제30호)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의 변경·단독정화조 관련사항의 추가 및 분뇨관련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및 용어변경(안 제4조, 제6조, 제7조 등)
  - 법 제18조제3항 → 법 제4조의2제2항      • 시행규칙 제19조 → 시행규칙 제30조
  - 정화조 →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 축산폐수정화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간이축산폐수정화조
-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멸실신고를 건축물 멸실신고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 제공(안 제6조제4항)
-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이 폐지되고 허가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허가조건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제4항)
- 환경부예규 제159(97. 9. 1)호에 의거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금액의 조정(안 제32조 별표4)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현행 정화시설이란 용어에서 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p>	<p>○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 및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처리시설은 현행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합병정화조를 합쳐서 처리시설이라 함.</p>

○ 신규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 없이 허가된 기존 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 신규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면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은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 관리를 위함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96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9. 7. 2

제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신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법적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새로이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고 허가를 받은 기존업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임.

2. 주요골자

○ 조례 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4항 3목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 4목 청소차 세차시설 삭제 수정.

##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④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최저 차고지 확보
2. 소독기 1조 이상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 4항</p> <p>시장은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뇨관련영업 신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 4항</p> <p>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저 차고지 확보</li> <li>2. 소독기 1조 이상</li> <li>3.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li> <li>4. 청소차 세차시설</li> </ol>	<p>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 4항</p> <p>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저 차고지 확보</li> <li>2. 소독기 1조 이상</li> </ol>
<p>제4조(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p> <p>①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p>	<p>제4조(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p> <p>①.....제4조의2제2항.</p>	<p>제4조(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u>도지사</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 ..... ..... ..... .....</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제4조의2제2항..... ..... ..... ..... ..... ..... ..... ..... .....</p>	
<p>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 분뇨수집 의무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 ..... ..... ..... ..... ..... ..... ..... .....</p>	<p>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중간준공검사) ①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이하 "오수정화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칠근배</p>	<p>제6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중간준공검사) ①법 제9조·제9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 ..... .....</p>	<p>제6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중간준공검사)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근, 배관, 노재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 .....</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u>오수정화시설</u> 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우게 하는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법 제12조..... <u>오수처리시설</u> 등..... ..... ..... .....</p>	
<p>④<u>오수정화시설을</u> <u>멸실하고자</u> 하는 자는 <u>별지 제5호서식에</u> <u>의한 멸실신고</u>를 하여야 한다. <u>멸실신고된 시설에</u> 대하여는 <u>현지확인 후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u> 정리하여야 한다.</p>	<p>④<u>오수처리시설을</u> <u>멸실하고자</u> 하는 자는 <u>별지 제5호서식에</u> <u>의하여 멸실신고</u>를 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27조제2항의 <u>규정에</u> <u>의하여 건축물멸실신고</u>를 한 자는 <u>오수처리시설</u> <u>멸실신고</u>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건축물멸실신고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u>관련부서에</u> <u>통보</u>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⑤제4항의 <u>규정에</u> <u>의하여</u> <u>오수처리시설</u> <u>멸실신고</u>가 된 시설에 대하여는 <u>현지확인 후</u> <u>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u> 정리하</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관리) ①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3(생략)</p> <p>②(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관리 대행자</p> <p>2.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p> <p>④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설비 등 정화기능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⑥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p>	<p>여야 한다.</p> <p>제7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①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p> <p>.....</p> <p>.....</p> <p>1~3(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오수처리시설 등.....</p> <p>.....</p> <p>.....</p> <p>1. 영 제31조.....</p> <p>.....</p> <p>2. 시행규칙 제97조.....</p> <p>.....</p> <p>.....</p> <p>④오수처리시설 등.....</p> <p>.....</p> <p>.....</p> <p>.....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p> <p>.....</p> <p>.....</p> <p>⑤(현행과 같음)</p> <p>⑥법 제14조의2제1항.....</p>	<p>제7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의한 <u>오수정화시설</u> 등의 개선 명령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u>오수정화시설</u> 등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u>오수정화시설, 정화조</u>의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u>오수처리시설</u> 등.....</p> <p>.....</p> <p>.....</p> <p>.....<u>오수처리시설</u> 등.....</p> <p>.....</p> <p>.....</p> <p>.....</p> <p>.....</p> <p>.....</p> <p>.....</p>	<p>제10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u>오수처리시설</u> 등의 청소대행) (개정안과 같음)</p>
<p>②(생략)</p> <p>제11조(<u>오수정화시설, 정화조</u> 등의 청소)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u>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u>에 대하여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u>오수정화시설</u>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u>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그 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1조(<u>오수처리시설</u> 등.....) ①.....</p> <p>.....<u>오수처리시설</u> 등.....</p> <p>.....</p> <p>②.....<u>오수처리시설</u>.....</p> <p>.....</p> <p>.....<u>오수처리</u></p> <p><u>시설</u> 등.....</p> <p>.....</p> <p>.....</p> <p>.....</p>	<p>제11조(<u>오수처리시설</u> 등의 청소)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1. (생략)</p> <p>2. 정화조오니  <u>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오니</u>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u>오수처리시설 등</u>……………            ……………            ……………            ……………            ……………            ……………</p>	
<p>3. (생략)</p> <p>②(생략)            제20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중간, 준공검사) ①<u>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u> 그 시공에 있어 <u>철근배근, 배관, 노재배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정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u>            ②<u>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            제20조(축산폐수처리시설 등… …) ①<u>법 제25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이하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를</u> ……………            ……………            ……<u>법 제26조 및 법 제33조</u>…            ……………            ……            ②<u>법 제26조 및 법 33조</u>…  <u>축산폐수처리시설 등</u>……………            ……………            ……………</p>	<p>제20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중간, 준공검사)            (개정안과 같음)</p>
<p>제21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및 청소수수료) ①<u>축산폐수정</u></p>	<p>제21조(축산폐수처리시설… …) ①<u>축산폐수처리시설</u>…</p>	<p>제21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청소수수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p> <p>.....</p> <p>.....</p>	<p>(개정안과 같음)</p>
<p>1. 정기점검</p>	<p>1. ....</p>	
<p>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u>축산폐수정화시설</u>은 월 1회 이상</p>	<p>가. ....</p> <p>.....</p> <p><u>축산폐수처리시설</u>.....</p> <p>.....</p>	
<p>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u>축산폐수정화시설</u>은 분기별 1회 이상</p>	<p>나. ....</p> <p>.....</p> <p><u>축산폐수처리시설</u>.....</p> <p>.....</p>	
<p>2. 방류수 수질 측정</p>	<p>2. ....</p>	
<p>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u>축산폐수정화시설</u>은 월 1회 이상</p>	<p>가. ....</p> <p>.....</p> <p><u>축산폐수처리시설</u>.....</p> <p>.....</p>	
<p>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u>축산폐수정화시설</u>은 6개월마다 1회 이상</p>	<p>나. ....</p> <p>.....</p> <p><u>축산폐수처리시설</u>.....</p> <p>.....</p>	
<p>3. <u>축산폐수정화시설</u>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p>	<p>3. <u>축산폐수처리시설</u>.....</p> <p>.....</p> <p>.....</p>	
<p>4.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축산폐수정화시설</u>의 점검 및 수질 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②.....<u>축산폐수처리시설</u>.....</p> <p>.....</p> <p>.....</p>	
<p>1. 제1항제1호의 정기점검은 <u>영제24조</u>의 규정에 의한 기술</p>	<p>1. ....<u>영제31조</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관리대행자 또는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p>	<p>.....시행규칙 제97조.....</p>	
<p>2.(생략) ③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별표 2”를 준용한다.</p>	<p>2.(현행과 같음) ③축산폐수처리시설.....</p>	
<p>제22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축산시설 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시설에 대하여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삭제)  시장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개정안과 같음)</p>
<p>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시장은 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 수집·운반·</p>	<p>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신청일..... (삭제)</p>	<p>제2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③(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 업체 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u></p> <p>③(생략)</p> <p>④시장은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뇨관련영업 신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생략)</p>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②(현행 제3항과 같음) (삭제)</p> <p>③(현행 제5항과 같음) (삭제)</p> <p>④시장은 <u>번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저 차고지 확보</li> <li>2. 소독기 1조 이상</li> <li>3.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li> <li>4. 청소차 세차시설</li> </ol>	<p>④(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정안과 같음)</li> <li>2. (개정안과 같음)</li> <li>3. (삭제)</li> <li>4. (삭제)</li> </ol>

[수정안 포함]

##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18조제2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8조제3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시행규칙 제26조”를 “영 제2조”로 한다.

제5조중 “제19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27조”를 “시행규칙 제36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이하 “오수정화시설 등”이라 한다)”를 “법 제9조·제9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11조”를 “법 제12조”로 “오수정화시설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오수처리시설을 멸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멸실신고를 한 자는 오수처리시설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건축물멸실신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멸실신고가 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후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오수정화시설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 제24조”를 “영 제31조”로 동항제2호중 “시행규칙 제66조”를 “시행규칙 제97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제11조·제13조”를 “제13조·제16조 및 제19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으로, “오수정화시설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오수정화시설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동조제1항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오수정화시

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중 "오수정화시설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9조 및 제10조"를 "법 제9조·제9조의2 및 제10조"로, "정화조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제11조 및 제13조"를 "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을 "법 제25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이하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를"로, "법 제26조"를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

제21조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영 제24조"를 "영 제31조"로, "시행규칙 제66조"를 "시행규칙 제9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시장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중 "별표 3"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7조제1항중 "공고일"을 "신청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최저 차고지 확보
2. 소독기 1조 이상

제32조중 "별표 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3)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법 정 동 명	비 고
전부제한지역	<p>원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약대동, 도당동, 상동, 중동</li> <li>○ 춘의동, 역곡동 중 녹지지역 제외</li> </ul> <p>소사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곡본동, 소사본동, 송내동</li> <li>○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중 녹지지역 제외</li> </ul> <p>오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종동, 내동, 삼정동</li> <li>○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중 녹지지역 제외</li> </ul>	
일부제한지역	<p>원미구 : 춘의동, 역곡동</p> <p>소사구 :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p> <p>오정구 :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p>	녹지지역에 한함

“별지 2”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표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로 한다.
5.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6.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른다.
7.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의견진술실시에 따른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정감할 수 있다.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500	700	1,000
2.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300	400	500
3.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법 제12조, 제26조, 제33조제2항)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	500	700	1,0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	1,000	1,000	1,000
4.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제27조)	1,000	1,000	1,000
5. 건축주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법 제13조제2항)	500	700	1,000
6.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단독정화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	100	300	500
나.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500	700	1,000
7.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법 제33조제3항)	500	700	1,000
8.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9.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7조)	500	700	1,000
10.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제2항)	300	400	500
11.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24조제4항, 제5조)	500	700	1,000
12. 분뇨 등 관련영업 또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법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300	400	500
13. 분뇨 등 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 제35조제3항)	500	700	1,000
14. 분뇨 등 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35조의2제2항)	300	400	500
15.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35조의3제1항)	500	7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6.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제5항)	500	700	1,000
17. 정화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9조제3항)	500	700	1,000
18.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2항)	300	400	500
19.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3항)	500	700	1,000
20.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제1항)	500	700	1,000
21.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0	400	500
22. 분뇨 등 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 제조업자로서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5조)	300	400	500
23. 사업자·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 등 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정화조 제조업자로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제1항)	300	400	500
24.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제2항)	2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 오수정화시설
- 합병 정화조
- 단독 정화조

이상보고서

수 신 :

참 조 :

소유자 및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정 화 조	소재지						
	건물용도			정화조 형식			
	인조수			용 량			
검 사 역	청소일자			방류수채취일자			
	검사일자			방류수질(BOD)			
	검 사 자			방류수적정여부			
이 상 내 역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	맨 홀	배기관
필요한 조치							
비 고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함에 있어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오수·분뇨 처리시설 멸실신청서

대 장 번 호		명 칭	
소 개 지		전 화 번 호	
소 유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유 자 주 소			
멸 실 사 유			
처 리 시 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수·분뇨 처리시설의 멸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오수·분뇨 처리시설 멸실신청서 1부
2. 오수·분뇨 처리시설 청소요금 계산서 1부